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선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선원 수장제도 폐지 및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8286호, 2021. 6. 15 공포)됨에 따라, 선내 사망자 인도 방식 및 해외취업 신고 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기타 선원행정처리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안 제11조 개정)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수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수장요건 규정을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함

나. 해외취업 신고 규정(안 제25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법 제44조의2 신설로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다. 국제협약을 국내수용하여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2항제2호가목 개정)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3회의 연료수급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 2회를 모의연료수급 훈련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라. 의료관리자 합격여부 공개방식 변경(안 제50조제4항 개정)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명단 게시가 아닌 합격여부 결과 공개로 개정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관리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 개정)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 발급증명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원 교육 이수증 발급(안 제57조제4항 개정)

선원 교육이수증 발급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안 제58조의5 제6항 신설)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보관 편의성을 증진함

바. 기초안전교육 대상자 확대(별표2 개정)

국가 관리 선박 승선원도 기초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관공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

사. 여객선 선체손상훈련 및 밀폐구역 진입·구조훈련 추가(별표4 개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국내 수용하여 여객선 선내 퇴선훈련 주기(10일) 도입, 인명사고 시 밀폐공간 구조훈련 주기 단축(6개월→2개월), 밀폐구역 진입 교육 신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조 중 “20톤미만”을 “20톤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내질서의유지에관한규정”을 “선내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구제”를 “유기(遺棄)구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작성하여”를 “작성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를 “조치해야 할 해원(海員)의 임무 숙지(熟知)상태”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하여 구조”를 “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통보하여야 하되”를 “통보해야 하며”로, “행하여지지 아니할”을 “어려울”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를 “해양경찰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출항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

여야”를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명정훈련시”를 “구명정훈련 시”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2월”을 “2개월”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적”을 “기적(汽笛)”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한다.

제8조 중 “비상훈련시”를 “비상훈련 시”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를 “촬영하고 유지·관리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정하는자는”을 “지정하는 사람은”으로, “순시하여 구명기구·대피통로 그밖”을 “순시하며 구명기구·대피통로 및 그 밖”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목적지”를 “같은 목적지”로,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를 “운항 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그밖”을 “화재예방 및 그 밖”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장)”을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조치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장”을 “수장(水葬)”으로,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을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하여

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장사(葬事) 또는 인도방법을 정한다.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시신의 국내항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한다.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이 내국인인 때에는 해양경찰서장과,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신의 인도방법을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승선중”을 “승선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를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로,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장”을 “선 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항)”을 “(圖書)”로 한다.

4. 속구목록(屬具目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선원명부 :”를 “선원명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해일지 :”를 “항해일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속구목록 :”을 “속구목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긴급한 때에는 말로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3인이상”을 “3명 이상”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대리인에게”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사고 기타”를 “해양사고 및 그 밖”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을 “구성하되,”로, “불가능한”을 “가능하기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대상해원”을 “징계대상 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한”을 “심의한”으로, “징계심사”를 “징계심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을 “제3조에서 규정한 위험물 중”으로, “적재하고 항행중”을 “신고 항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신지 않고 항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기재”를 “기록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을 “유기사실인정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괄하여”를 “한꺼번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수가”를 “여러 척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항 중인 여객선이”를 “운항 중인 여객선이”로, “대비하여”를 “대비해”로,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다수”를 “여러 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제1항에 따른 일괄공인을 신청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운항중”을 “운항 중”으로, “인하여 직무”를 “직무”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인수하여”를 각각 “대리하여”로, 같은 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제1항에 따른 공인을 신청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신원보증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신청함에 있어”를 “신청할 때”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에 관하여는”을 “방법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한 사람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취업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조”를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하여야”를 각각 “공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 중 “위반되는지”를 “위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입하였는지”를 “가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를 “구직 및 구인 등록”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을 “(선원수첩 재발급 시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인사항에 대하여”를 “공인사항은”으로 한다.

제30조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에서”로, “각호의 자를”을 “각 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외”를 “사람 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에서”로, “관련되지 아니하는”을 “관련이 없는”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을 “안내원 등으로 승무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발급신청인을 통하여”를 “발급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을 통하여”를 “한정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지의 여부를”을 “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외출입의”를 “국외출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재하고”를 “기록하고”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재사항을”을 “기록사항을”로, “곤란하게된”을 “곤란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를 “재발급을 신청해야”로 한다.

- ①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8조의3제4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을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 등”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일”을 “같은”으로, “2인”을 “2명”으로,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1명의 퇴직선원이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2.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록이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제39조의2 중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을 “영 제18조의5제1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9조의4 본문 중 “제39조의3의 규정”을 “제39조의3”으로,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을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으로,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를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7호의9서식에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39조의5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지 아니하여도”를 “않

아도”로, 같은 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39조의6제1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하여 행하는”을 “검직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운항과의”를 “운항과 외”로, “자는 별표2중”을 “사람은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수급작업”을 “수급 작업”으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회의 연료 수급 작업 중 2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 훈련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4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수급작업”을 “수급 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선원당직국제협약」”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원에 대하여”를 “선원은”으로,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선원

당직국제협약”을 “「선원당직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8세이상일”을 “18세 이상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적재하여야”를 “갖춰야”로,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멍뿔목”을 “선박은 팽창식구멍뿔목”으로, “각호”를 “각 호”로,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을 “선박은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최대탑재인원보다”를 “최대탑재인원 보다”로, “감할”을 “줄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속구조정 : 2인”을 “고속구조정: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하여”를 “정해”로 한다.

1. 정원 40명 이하의 구멍정: 2명
2. 정원 41명 이상 61명 이하의 구멍정: 3명
3. 정원 62명 이상 85명 이하의 구멍정: 4명
4. 정원 86명 이상의 구멍정: 5명
6. 구멍뿔목: 1명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료·항해용구·기타·물품”을 “식료, 항해용구, 그 밖의 물품”으로, “구멍정등의”를 “구멍정 등의”로, “승정지휘”를 “탑승 지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멍출발사기·구멍부환·기타”를 “구멍출발사기, 구멍부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선원당직국제협약」”으로 한

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1천 500명”을 각각 “1천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을 할”을 “발급할”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항해·정박등”을 “항해·정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압항부선 :”을 “압항부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저조망부선 :”을 “해저조망부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45조의2제3항 후단 중 “경우 여객선선장”을 “경우 여객선선장”으로, “기산한다”를 “기산(起算)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각각 “실시해야”로 한다.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박중”을 “정박 중”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 중 “1년에 대하여”를 “1년마다”로, “매 1월”을 “1개월”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한다.

제46조의6제1항 본문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행중”을 “항행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계약이”를 “고용계약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여방법에 대하여는”을 “부여방법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유급휴가중”을 “유급휴가 중”으로, “지급하여야”를 “지

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않은 때”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를 “유급휴가일수는”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하여 5인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7조의3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의6제4호 중 “명에”를 “지시에”로 한다.

제47조의7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47조의8제1호 중 “숙지하고”를 “자세히 알고”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한”을 “기록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탐재인원”을 “탐승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하게 하여야”를 “승무시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천톤이상”을 “5천톤 이상”으로, “200인이상”을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300톤이상”을 “300톤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기시험 :”을 “실기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을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를

“공고해야 하며 시험일, 시험장소, 그 밖의 시험에 관해”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발급신청서(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증명하여”를 “증명(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수”를 “식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같은 호 중 “동등하다고”를 “같은 수준이라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고자 하는”을 “실시하려는”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경계 기타”를 “신경계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을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중”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4조 중 “(색각검사에 대하여”를 “(색각검사”로, “항해중건강진단”을 “항해 중 건강진단”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4조의2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을 “제25조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 중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를 “기록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56조의5의 제목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를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하여 주어야”를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본문 중 “신고하고자 할 때”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박중”을 “정박 중”으로, “하역등”을 “하역 등”으로, “명시”를 “분명하게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위반되는지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제58조의3”을 “경우에는 제58조의3”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야”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선내 불만처리 절차

제58조의3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를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8조의4제2항제1호 중 “신조선”을 “신조선(新造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하여 인증 검사”를 “인증검사”로 한다.

제5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법 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58조의6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8조의8제1항제3호 후단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기관으로 하여금**”을 “**대행기관은**”으로, “**하게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재발급 :**”을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 :**”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선원수첩정정 :**”을 “**선원수첩 정정(訂正):**”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급 :**”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응시수수료 :**”를 “**응시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발급 :**”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재발급 :**”을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업무중**”을 “**업무 중**”으로, “**행하는 업무와**”를 “**수행하는 업무와**”로, “**행하는 업무의**”를 “**수행하는 업무의**”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응**”을 “**응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접수기간 내**”를 “**접수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9조의2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제38조의 규정을”을 “제38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을 “사람이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로,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기초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란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가 관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유효기간
기초안전교육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4.5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3. 국가가 관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2 일 (재 교 육 의 경우에는 1일)	5년
상급 안전 교육	구명정 조종사 교육	1.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구명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3 일 (재 교 육 의 경우에는 0.5일)	5년
	상급 소화 교육	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상급소화에 관한 교육내용	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응급처치담당자 교육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	3 일 (재 교 육 의 경우에는 0.5일)	5년
	고속구조정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고속구조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1일	5년

	조종사 교육	무하고자 하는 자			
여객선 교육	여객선 기초 교육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포상 비상 시 여객 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친숙훈련, 여객선 안전훈련 및 군중관리)	2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여객선 상급 교육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4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당직부원 교육		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항해당직 요령 및 정박당직 요령	5일	없음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및 운항당직 요령	1월 이상	없음
유능부원 교육		1.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갑판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2.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기관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능부원에 관한 교육내용(당직일반, 화물취급, 해양오염방지, 기기보수 등)	5일	없음
		운항당직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운항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15일 이상	없음
탱커기초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3일	없음

교육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액화가스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3일	없음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운항장, 운항사로 승무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으로서,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에 관한 교육내용(위험방지, 비상대응 등)	2일	없음
선박조리사 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선박조리사의 자질 향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일	없음

				그 밖의 사람: 3 일	
의료 관리 자 교육	자격 취득 교육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 내용	5일	없음
	보수 교육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여 의료관리자 자 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 육내용	2일	5년
고 속 선 교 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	1. 탈출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 의 조작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소집 및 유 도, 구명동의 착용의 지원, 기타 비상시에 있어서의 여객의 안 전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박의 복원성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일	없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장 및 갑판부 직원	1. 선박의 특성 및 항행 상의 조건에 따른 조 선방법에 관한 사항 2. 조타시설, 기타 선 박의 항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기관을 제외한다)의 조작에 관한 사항	1일 (재교육 의 경 우에는 0.5일)	2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	기관의 조작에 관한 사 항	1일 (재교육 의 경 우에는 0.5일)	2년

선박 보안 교육	선박 보안 상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 으려는 사람	선박보안계획, 선박보 안 등급, 선박보안장 비 및 시설, 선박보안 점검 및 평가, 선박보 안위험 및 대응에 관 한 사항	2일	없음
	선박 보안 중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 자를 보조하려는 사람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일	없음
	선박 보안 기초 교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 하려는 사람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 항	0.5일	없음

비 고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times \nabla^{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 는 계획 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m^3)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제40조의제1항 관련)

구 분			주 기	대 상 자
선내숙지훈련			수 시	모든 선원
해 상 인 명 안 전 훈 련	소 화 훈 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단 정 훈 련	퇴 선 훈 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구명정 강화	3개월	모든 선원
		진 수 훈 련	1년	모든 선원
해 난 사 고 대 응 훈 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3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인명사고시 행 동 요 령	해 상 추 락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밀폐공간 진 입 및 구조 훈련	2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밀폐구역 의 진입 또는 구조 임무를 담당한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선박보안 숙지교육			선상직무 수행전 및 필요시	국제항해 에 종사하 는 선박의 모든 선원
밀폐구역 진입 선내교육			2개월	국제항해 에 종사하 는 선박의 모든 선원

■ [별지 제11서식] <개정 2000. 00. 00.>

해 외 취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승 선 사 항	① 업 체 명 (관리회사)		② 활 동 수 역		③ 선 박 번 호 또 는 호 출 부 호 (IMO 선 박 번 호)	
	④ 선 박 명		⑤ 총 톤 수	()G/T	⑥ 기 관 출 력	()K W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비 상 연 락 망 (전화번호 등)		
「선원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 화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구 비 서 류	1. 신고서 1통 2.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인당 1천원	

00000-00000민

297mm×210mm

00.00.00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u> ----- ----- <u>필요한</u> ----- ----- -----.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①·② (생략) ③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u>증명하여</u> 주고, 유능부원 자격증을 발급[「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 <u>하여야</u> 한다.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증명해</u> ----- ----- ----- ----- ----- ----- ----- <u>해야</u> ----- -----.
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	제2조(적용제외 어선) -----

의 가입,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
증명서에 관한 규정

3. ~ 6. (생략)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
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
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①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
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2. (생략)

3. 법 제15조에 따른 비상배치
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4.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적용할
때 -----

-----.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① -----
----- 작성하고 -----

해야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조치해야 할
해원(海員)의 임무 숙지(熟知)
상태

4. (현행과 같음)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 의무의 한계)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생략)
-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 의무의 한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구조 -----

3. -----
----- 그 밖의 -----
----- 않다고 -----

4. (현행과 같음)
- ② -----
----- 않는 -----

----- 통보해야 하며 -----
----- 어 -----
----- 려울 -----
----- 해양경찰관서에 이 -----
----- 사실을 통보해야 --.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
(생 략)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선내비상훈련) ① 삭 제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해야 -----
-----.

제7조(선내비상훈련)

② -----

----- 실시해야 -----.

④ --- 해당 선박-----
----- 출
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

⑤ --- 구명정훈련 시-----
----- 사용해야 -----
----- 2개월-----

-- 실시해야 -----.

⑥ -----
----- 기적(汽笛) -----

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선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

-----.

⑦ -----

----- 안내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 비상훈련 시-----

----- 촬영하고 유지·관리해야 -----
-----.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① ---
----- 지정하는 사람은 --
----- 순시하며 구명기구
·대피통로 및 그 밖-----
----- 기록
해야 -----. ---- 같은 목적지-

----- 운항 시마다 실시하

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제11조(수장)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 수장할 수 있다.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

고 기록해야 ----.

② -----

유지·관리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

---- 화재예방 및 그 밖-----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조치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장사(葬事) 또는 인도방법을 정한다.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시신의 국내항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한다.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

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신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
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일 것

5.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
일 것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
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
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
망한 사람의 유발(遺髮) 및 그
밖의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
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

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이 내국인인 때에
는 해양경찰서장과, 사망한 사
람이 외국인인 때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신의 인도
방법을 정한다.

<삭 제>

<삭 제>

② --- 수장(水葬)----- 적절
한 ----- 시신이 떠오
르지 않도록 -----
-- 해야 ----.

③ -----

----- 보관해야 -----.

제12조(유류품의 처리) ① -----

----- 지체 없-----
승선 중-----

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비치) ① 삭제

②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략)
4. 속구목록
5. (생략)
6. 삭제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

-----.

② -----
--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
----- 기명·날인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

③ 선장-----

----- 발급해야 -----.

제13조(서류의 비치)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속구목록(屬具目錄)
5. (현행과 같음)
7. -----

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
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
 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
 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
 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
 식에 의한다.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삭 제

4.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
 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
 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
 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
 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

-----(圖書)-----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

 ----- 각 호-----
 --.

1. 선원명부: -----.

 -- 따른다.

2. 항해일지: -----

4. 속구목록: -----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
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긴급한 때에는 말로 보고할 수
있다. -----

 ----- 3명 이상-----

 --- 제출해야 -----.

② -----
 ----- 대리인에게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리 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징계위원회) ①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1등운항사·통신장·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

--- 보고해야 ----.

③ -----

----- 제시해야 -----.
--- 해양사고 및 그 밖 -----
----- 그렇
지 않다.

제16조(징계위원회) ① -----

구성하되, -----
----- 가능하기 않은 -----

-----.

② _____
따라 _____.

③ ----- 징계대상 해원-----

④ _____

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 7. (생략)

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심의한 -----
----- 징계심의를 -----
----- 작성해야 -----
----.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

----- 제3조에서 규정한 위험물 중 -----
----- 신고 항행 중 -----
-----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실지 않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① ----

(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기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일괄공인) ①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 기록이-----

----- 제출 해야 -----.

② -----

----- 않을 -----
-----.

③ -----
----- 유기사실인 정을 -----

----- 통 지 해야 -----.

제20조의2(일괄공인) ① -----

----- 한꺼번에 -----

있다.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서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예비공인) ①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

1. -----
----- 여러 척이 -----

2. 운항 중인 여객선이 -----

대비해 -----

----- 않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3. 같은 -----
여러 척-----

② 제1항에 따른 일괄공인을 신청하려는 -----

----- 제출
해야 ----.

제20조의3(예비공인) ① -----
----- 제3항에 따라 -----

운항 중-----

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
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
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 (생략)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
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
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
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
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
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 직무-----

----- 대리하여 -----

② ----- 대리
하여 -----

----- 사람이어야 -----.

③ 제1항에 따른 공인을 신청하
려는 -----

----- 제출해야 -----.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원보
증서-----

----- 따른다.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의 공인신청) -----

----- 사람이 -----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
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① 법 제
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
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
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 ①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
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
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
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
는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

----- 제출해야 ----
----.

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① ----

신청할 때 -----

----- 첨부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 ① ---

-----.

1. -----

----- 않는 -

2. 3. (현행과 같음)

② -----

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이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인신청과 공인의 사후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

----- 제출해야 -----.

③ -----

방법은 -----
-----.

제25조(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한 사람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취업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 -----

----- 이 조----- 공인해

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헌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 ~ 4. (생략)

5. 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헌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야 -----.

----- 공인해야
-----.

1. -----

----- 위반 -----

2. -----

----- 가입

3. ~ 4. (현행과 같음)

5. ----- 구직 및
구인 등록 -----
----- 제외한다.

6. 제57조에 따른 -----

7. -----

-----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

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

----- 보내고 -----

----- 지방해양항만관청
에서 -----

-----.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① -----

----- 지체 없 -----

----- 신청해야 -----.

② -----

----- 첨
부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 시의 확

인) -----
----- 공

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
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
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
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
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
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
항등 증명)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주소
2. ~ 4. (생 략)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
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
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
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

인사항은 -----
-----.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 않고 -----

-----.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
항등 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제출해야 ----.

1. ----- 사람의 ---

2.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

----- 첨부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삭제

4.·5. (생략)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

----- 확인해야 -----

--- 않는 -----

----- 첨부해야 -----
-----.

4.·5.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

----- 제출해야 -----
-----.

확인해야 않는 첨부해야.

- ### 2.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 -----
 -- “해양수산부령에서 -----
 ----- 각 호의 사람을 -----
 --.

2. ·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 외-----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 사무원·매점원 및 안내원등
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
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
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
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
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
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
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
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
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

--

② -----
“해양수산부령에서 -----
----- 관련이 없
는 ----- 사람
으로서 ----- 안내원 등
으로 승무하는 사람을 ----.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 -

----- 발
급신청인에게 -----
----.

② -----

----- 한정한
다)에게 -----.

③ -----

-- 않은 ----- 지
를 -----

-----.

④ -----

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 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 (생략)

⑤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발급해야 -----
-----.

1. 국외출입에 -----
--

2. -----
-- 않는 -----

3. (현행과 같음)

⑤ -----

----- 기록하고 -----
----- 따
라 -----.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4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

② -----

----- 기록사항 -----
----- 곤란하게 된 -----

--- 지체 없-----

----- 재
발급을 신청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개의(開議)하고-----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 -----
----- 신청하려
는 경우에-----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 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 해당 -----

-----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록이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② 같은 -----
----- 2명 -----
----- 1명의 퇴직선원이 제1항에 따른 -----

----- 않을 -----.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
----- 지 -----
체 없-----
따라 -----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사유를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
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
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
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
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
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해야 ----.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

----- 사
람은 -----
----- 해당 -

----- 제
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 한정한다---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
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

-----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 따라 신청인에
게 통지해야 -----.

----- 별지 제17호의9서식에 따라 --
--- 통지해야 -----.

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휴식시간의 완화는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속하여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3. (생략)

4. 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을 주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되는 휴식시간 사이의

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않을 ----. ----

-----.

3. (현행과 같음)

4. -----

가. -----
----- 않을 -----

나. -----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식
시간의 완화를 적용하는 기간
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
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
고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
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
간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하여
도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의 완화의
적용기간은 계속하여 48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휴
식시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분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않을 ---

5. -----

----- 않을 ---

② -----

----- 충족
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않아도 -----

----- 않을 ----

3. -----

가. (생 략)

나. 연속되는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 휴가 간격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유급휴가를 주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에 1일 이상을 더한 날 수만큼의 유급휴가를 줄 것. 이 경우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 략)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가. (현행과 같음)

나. -----

않을 ----

4. -----

----- 정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

-----.

1. -----

----- 않을 ----

2. (현행과 같음)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① -----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2의 당직부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자동화 선박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2중 운항당직부원교

-----.

1. (현행과 같음)
2. -----
----- 2개월 -----

3. -----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

② -----

----- 겸직할 수 있는 -----

-----.

1. (현행과 같음)
2. -----
----- 제2항에 따른 -----
-----.
----- 운항과 외 -----
사람은 별표 2의 -----

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중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

3. -----

----- 같은
수준 이상-----

③ -----

----- 증명해 -----

----- 해야
-----.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충족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③

증명해

해야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갖춰야 ----.

1. · 2.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

무원의 자격요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생 략)

2.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에 따른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 중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다)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

무원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수급

작업 경력을 포함하여 1개
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
을 것 <단서 신설>

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을 보유하고, 가스연료추
진선박 국제기준 적용 선
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 또는 액화
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
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 또
는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
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
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
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연료추진
선박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
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
로 한다.

④ (생략)

작업 -----

- 것. 다만, 3회의 연료 수
급 작업 중 2회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 훈련으로 대체
가능하다.

나. -----

수급 작업 -----

③ -----

「선원당직국제협약」-----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 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1. 18세이상일 것

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표 2의 상급안전교육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 -----

② -----

----- 선원은 -----

----- 증명해 -----

-----해야 -----

----- 「선원당직국제협약」 -----

1. 18세 이상일 -----

2. -----

----- 6개월 -----

③ -----

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
 ・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
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
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
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
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1. 정원 40인 이하의 구명정 : 2
인
2. 정원 41인 이상 61인 이하의
구명정 : 3인
3. 정원 62인 이상 85인 이하의
구명정 : 4인
4. 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
인
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
인
6. 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 갖춰야 -----

----- 선박은 팽창식구명뗏
목-----

각 호-----

----- 선박은 1명-----

----- . ----- 최대탑재인원
보다 -----

----- 줄일 -----.

1. 정원 40명 이하의 구명정: 2
명

2. 정원 41명 이상 61명 이하의
구명정: 3명

3. 정원 62명 이상 85명 이하의
구명정: 4명

4. 정원 86명 이상의 구명정: 5
명

5. ----- 고속구조정: 2명

6. 구명뗏목: 1명

④ -----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1. 식료·항해용구·기타·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 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 (생략)

3. 구명출발사기·구명부환·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표 2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

----- 정해 -----
--.

⑤ ----- 각 호 -----
-----.

1. 식료, 항해용구, 그 밖의 물품
----- 구명정
등의 -----
----- 탑승 지휘

2. (현행과 같음)

3. 구명출발사기, 구명부환, 그
밖의 -----

4. ----- 그 밖 -----

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① -----

----- 증명해 -----

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 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생략)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 2. (생략)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 해야 ---.

② -----
----- 「선원
당직국제협약」 -----
--.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1천500명 -----

4. ----- 1천500명 -----

③ -----

--- 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 -----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
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1. (생략)
2. 선박의 항해·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3. 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제출해야 ----.

② -----

----- 발급해야 -----.

③ -----

--- 발급할 -----.

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항해 · 정박 등 -----

3. 압항부선: -----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4. 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생략)

4. 해저조망부선: -----

② -----

----- 대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경우 여객선선장-----

기산(起算)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2. (생략)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생략)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⑤ -----
----- 실시해야 -----

---. -----

----- 실시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

-----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3. 정박 중 -----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

-----.

1. (현행과 같음)

2. -----
----- 별표 1에 따른 -----

3. (생략)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제46조의7(유급휴가급)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

3. (현행과 같음)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
----- 1년마다

----- 1개월-----
----- 더한다.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① -----

----- 3개월 -----

---. ----- 항행 중-----

-----.

② ----- 고
용계약에서 -----

---.

③ -----
----- 부여방법
은 -----
----- 따른다.

제46조의7(유급휴가급) ① -----
----- 유

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선내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를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

급휴가 중-----
----- 지급해야
-----.

② -----

----- 않은 때-----
----- 유급휴가일수
는 -----
----- 지급해야 -----.

제47조(선내급식) ① -----

----- 포함한 5명 이상-----

----- 관리해야 -----
-----.

----- 그렇지 않다.

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

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

-- 제출해야 ----.

제47조의5(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① -----

--- 제출해야 ----.

② -----

-----해야 -----.

제47조의6(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
시에 -----

· 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7조의7(제복의 제공) 법 제82 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u>제공</u> <u>하여야</u> 하는 제복의 제공 기준 및 복제는 별표 5의3에 따른다.	제47조의7(제복의 제공) ----- ----- ----- <u>제공</u> <u>해야</u> ----- -----.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 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 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 ----- ----- ----- ----- -----.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u>숙지하고</u> 준수할 것	1. ----- ----- ----- <u>자세히 알고</u>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사의 승무) ①선박소유 자는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 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u>기재</u> <u>한</u>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 관청에 <u>제출하여야</u> 한다.	제48조(의사의 승무) ① ----- ----- ----- ----- <u>기록</u> <u>한</u> ----- ----- <u>제출해야</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대 <u>탑재인원</u> 및 승선인원	2. --- <u>탑승인원</u> -----

3. · 4. (생 략)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제49조(의료관리자) ① 삭 제

②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 ·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 다.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

3. · 4. (현행과 같음)

② -----

--- 승무시켜야 -----.

③ -----

---- 5천톤 이상-----
----- 200인 이상-----
-----.

제49조(의료관리자)

② -----

----- 300톤 이상-----
-----.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

-----.

----- 사람으로서 -----

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1. (생략)

2.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 사람은 -----
-----.

1. (현행과 같음)

2. 실기시험: -----
--

② -----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
----- 공고해야 하며 시험일, 시험장소, 그 밖의 시험에 관해 -----
-----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

③ -----

----- 제출해야 ----.

④ -----

-----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

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

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① -----
-----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

----- 사람
을 -----.

② -----
---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

---- 사람을 -----.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① -----

--- 발급신청서(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

② -----

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
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은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
항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 ~ 6. (생 략)

② (생 략)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
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
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
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

---- 증명(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해 -----.

----- 통보(정보
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
다)해야 ----.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 --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 식수-----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야 -----.
----- 유지해야 --
----.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①

관을 말한다.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해당 건강검진기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②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3조(건강진단) ①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

-----.

1. -----
-- 경우: -----

2. ----- 경우: -----

----- 같은 수준이라고 -----

② ----- 실시하려는

----- 신고해야 -----
-----.

③ -----

--- 해야 -----.

제53조(건강진단) ① -----

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 8. (생략)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비형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

----- 각 호 -----

1. ----- 신
경계 및 그 밖의 -----
--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검사 중 -----

----- 않을

-----.

----- 그렇
지 않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

-----(색각검사)-----

----- 항
해 중 건강진단-----

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u>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u>	----- ----- ----- ----- ----- ----- <u>필요</u> <u>한</u> ----- ----- --.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u>의한다.</u>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u>송부하여야</u> 한다.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 ----- ----- ----- <u>따른다.</u> ----- ----- ----- <u>보내야</u> ----- --.
제55조(건강진단비용)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u>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u>	제55조(건강진단비용) ① ----- ----- ----- ----- <u>제25조제5항의</u> ----- -----.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u>제1항에 따른</u> ----- ----- -----.
제56조(연소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제56조(연소선원의 사용승인) -- -----

따라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받
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
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5(선원의 직업소개사업
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
(생략)

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①영 제
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삭제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선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
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①선
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

---- 기록하여 지방해양항만관
청에 제출해야 -----.

제56조의5(선원의 직업소개사업
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

-----.

④ -----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①

----- 신고하려는 경
우-----

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

----- 한정한다

-- 제출해야 ----.

정박 중 -----

-- 하역 등-----

----- 분명하게 작성----

② -----

----- 위반되는지를 확인해야 -----.

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① -----

----- 통보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

----- 통보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① -----

----- 제출해야 -----
--.

② -----

----- 경우에는 제58조의3 -----
-----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

③ -----

적합증서를 <u>발급하여야</u> 한다.	----- <u>발급해야</u> -----.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법 제136조제 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 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선내불만처리절차</u>	13. <u>선내 불만처리 절차</u>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인증검사) ① 법 제137 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 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 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 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58조의3(인증검사) ① ----- ----- ----- ----- ----- <u>제출해야</u>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 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 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 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 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 이라 한다) <u>으로 하여금</u> 제58조 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 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u>적</u>	② ----- ----- ----- ----- ----- ----- ----- ----- ----- ----- ----- ----- <u>적</u>

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
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
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
용만 해당한다.

1. ~ 5. (생 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
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
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
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
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
시기 등) ① (생 략)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
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합한지를 검사하게 해야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등에게 -----

-----.

④ -----

----- 보고해야
-----.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신조선</u> 의 인도	1. <u>신조선(新造船)</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 ----- -----.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 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u>위하여</u> 시운 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1. ----- ----- ----- ----- <u>위해</u> ----- -----
2. 천재지변 등으로 <u>인하여</u> 인 <u>증검사</u> 를 받을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 <u>인증검사</u> ----- ----- -----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생략)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 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 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표시하여야</u> 한다.	② ----- ----- ----- ----- ----- <u>표시해야</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
인증검사관에 대하여 연 1회 이
상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해
사노동적합증서 및 법 138조제4
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
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시해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

④ -----

-- 기록·관리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① -----

신청해야 ----. -----

----- 확인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해야 -----.

③ -----

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
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0조제2
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
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
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
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
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
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
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
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 보고해야 -----.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 확보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

---- 제출해야 -----.

② -----

----- 대행기관은

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수수료) ①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

2. 각종 공인·증명 및 확인 : 1
인당 1천원

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
수첩정정 : 1인당 1천원

4. 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
천원

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
료 : 1인당 5천원

6. 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
천원

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
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
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
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
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
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

해야 -----.

제59조(수수료) ① -----

-----.

1. ----- 재발급: -

2. ----- 확인: ---

3. ----- 선원
수첩 정정(訂正): ----

4. ----- 발급: -----
--

5. ----- 응시수수
료: -----

6. ----- 발급: -----
--

7. -----
재발급: -----

② -----

----- 납부해야 -----.

----- 업무 중 -----

--- 수행하는 업무와 -----

----- 수행하는 업무의

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생략)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

납부해야 -----

-----.

③ -----

수행하는 ----- 제1항
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반환
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응시 -----

3. ----- 접수기간 -----

4. (현행과 같음)

5. ----- 않

<u>니하고</u>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59조의2(선원교육기관)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u>선박직원법 시행령</u>」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 <u>지방해양수산관청</u>은 법 제3조의 <u>규정에 의한</u>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u>자</u>에 대하여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u>제38조의 규정을</u>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u>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u> 출국할 때에는 <u>지방해양수산관청</u>에서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대하여</u>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u>고</u> ----- ----- ----- ----- 제59조의2(선원교육기관) ----- ----- -----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 ----- -----.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 <u>지</u>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u>따른</u> ----- -- <u>않는</u> ----- ----- <u>사람</u>에 ----- ----- ----- <u>제38조를</u> ----- -----. ② ----- <u>사람이 선원수첩을 발급받</u>----- ----- <u>지방해양항만관청</u> ----- -----. 제62조(규제의 재검토) ----- ----- <u>대해서는</u> -----
---	--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 2. 삭제 3. ~ 12. (생략)	----- ----- ----- ----- <u>해야</u> ----- --- 3. ~ 12. (현행과 같음)
--	---